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 개정(안) 요약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 개정 추진

가. 목적

- 형식승인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로 신청인의 편의도모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정비 및 유사규정 통합

나. 주요내용(지침요약 대비표 : 붙임 1)

- 형식승인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 형식승인 면제기기 수입추천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사후관리절차 명시(관세청과 협의중)
 - 형식승인 및 시험에 관한 방법·절차를 명확히 규정
 - 형식승인 번호체계 보완

- 관련서식 정비 등

-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정비
 -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 형식승인심의회 심의절차 생략 등
- 별도 고시된 형식승인대상 기자재를 개정하여 형식승인지침에 통합
 - ※ 대상기자재 개정(안)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 관련기관 및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향후계획

- 형식승인지침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 및 업체의 의견수렴
 - ※ 형식승인심의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 확정
- 형식승인지침 개정 및 고시
 - ※ 통산부 및 관세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관련규정 개정 동시 추진

붙임 1 :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 대비표
(요약)

지상중계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 개정(안) 요약

라.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 대비표(요약)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신설〉	제1조(목적) “대상기자재 관련내용 포함”	○ 별도고시된 형식승인 대상기자재 (고시 제88호, '90. 9. 3)를 통합
	제2조(정의) “기간통신망, 종합유선방송전송망, 위해” 정의 신설	○ 대상기자재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함
	제2장 형식승인대상 기자재	
제2조(적용범위) 〈신설〉	〈삭제〉	○ 관련내용을 개별조문에 직접 반영
〈신설〉	제3조(형식승인 대상 기자재)	○ 별도 고시된 형식승인대상 기자재를 통합
〈신설〉	제4조(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기자재)	- 대상기자재 조정
〈신설〉	제5조(형식승인대상 기자재 확인)	- 형식승인면제기기 수입 추천제를 신고제로 변경 - 대상기자재 확인절차 신설
	제3장 기자재 시험	
〈신설〉	제6조(시험신청)	○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
〈신설〉	제7조(변경시험신청)	※ 지정시험기관의 자체규정으로 정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침에 반영
〈신설〉	제8조(시험신청접수)	
〈신설〉	제9조(시험)	
〈신설〉	제10조(시험면제)	
〈신설〉	제11조(동일형식기자재 확인)	
〈신설〉	제12조(자체시험성적서 등)	
〈신설〉	제13조(시험기관 지정기준)	

지상중계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 개정(안) 요약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장 형식승인 신청과 심사 등	제4장 형식승인 신청과 심사 등	
제3조(형식승인신청) 제4조(제출서류의 생략) (신설)	제14조(형식승인신청) 제15조(형식승인신청접수)	○ 유사조문 통합 ○ 절차를 명확히 규정
제5조(형식승인 심사) 제6조(심의회의 심의생략) 제7조(처리기간 등) 제8조(결과통보) (신설)	제16조(형식승인) 제17조(형식승인번호)	○ 관련조문 통합 및 절차 간소화 - 형식승인심의회 심의절차 생략 ○ 내부문서에 의한 업무지침의 내용을 보완하여 반영
(신설)	제5장 변경신고 등	
제9조(변경신고)	제18조(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 절차신설
제10조(형식승인 해지) (신설)	제19조(변경신고) 제20조(형식승인해지)	○ 자구수정 ○ 절차명확화
	제21조(형식승인서 재교부)	○ 절차신설

자상증거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 개정(안) 요약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3장 지정시험기관 등		
제11조(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삭제〉	기본법시행규칙에 기반영
제12조(시험기관의 시험분야 추가 지정신청)	〈삭제〉	
제13조(시험기관의 지정심사 등)	〈삭제〉	
제14조(시험기관 지정승인 및 유효기간 등)	〈삭제〉	
제15조(비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	〈삭제〉	
제4장 시험업무 등		
제16조(시험기준)	〈삭제〉	기본법시행규칙에 기반영
제17조(시험업무)	〈삭제〉	
제18조(시험업무의 정지 등)	〈삭제〉	
제19조(시험업무의 금지요구)	〈삭제〉	
제5장 기자재 품질관리 등		
제20조(품질관리)	〈삭제〉	기본법시행규칙에 기반영
제21조(조사·확인 등)	〈삭제〉	
제22조(업무의 대행 등)	〈삭제〉	
제6장 보칙		◦ 행정심판법 및 기본법 제45조의2(청문) 규정으로 적용가능 ◦ 제19조에 통합 ◦ 신청인의 제출자료보호규정 명시 ◦ 제목변경
제23조(이의처리등)	〈삭제〉	
제24조(양도등의 신고)	〈삭제〉	
〈신설〉	제22조(자료보호)	
제25조(형식승인 실적보고)	제23조(자료제출 및 보고)	

지상중계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 개정(안) 요약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제3조(형식승인번호부여의 특례)	○ 개정된 지침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별지제1호서식 수입추천서 별지제2호서식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신청서 별지제3호서식 변경신고서 별지제4호서식 형식승인시험기관 재지정신청서 별지제5호서식 품질관리실적기록부	별지제1호서식 전기통신기자재 수입 신고서(제4조제2항) 별지제2호서식 동일형식 전기통신기자재 확인신청서(제11조제1항) 별지제3호서식 동일형식 전기통신기자재 확인서(제11조제4항) 별지제4호서식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신청서(제14조1항) 별지제5호서식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제18조) 별지제6호서식 전기통신기자재 변경 신고서(제19조)	○ 지침 본문의 내용 개정에 따라 서식 및 별표 정비
별표1 경미한 사항의 범위(제9조)	별표1 전기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지	
별표2 시험분야별 시험설비 및 시험원의 수(제11조)	않는 형식승인대상기자재(제3조제2호)	
별표3 단자함, 접속함 규격 및 가입자보호기 성능기준(제16조)	별표2 지정시험기관 세부지정기준(제13조제2항)	
별표4 전화기용 콘넥터 규격 및 전기적 조건(제16조)	별표3 전기통신기자재 부호(제17조)	
별표5 광대역 통신기기 성능기준(제16조)		